



# 은평구 폭염기 위험직업군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정책토론회 자료집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Eunpyeong-gu Labor Support Center

**은평구 폭염기 위험직업군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정책토론회**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Eunpyeong-gu Labor Support Center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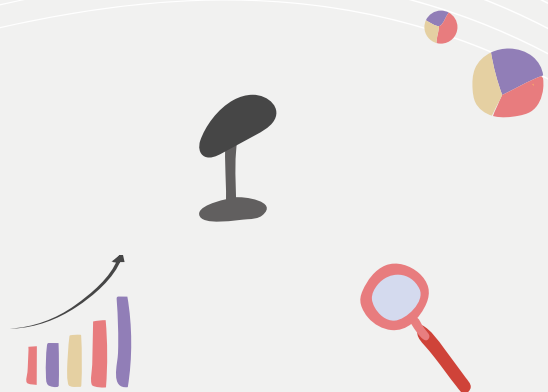
**발제** ..... p05

**은평구 폭염관련 노동자 근무환경실태 연구**  
**이원희** 노무사(하이에이치알 노무법인)

**토론** ..... p20

**재난안전 사회적 위험 시기, 노동안전 과제 모색**  
**김종진** 이사장(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현장 발언** .....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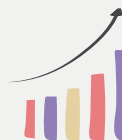


# 발제



은평구 폭염관련 노동자 근무환경실태 연구

이원희 노무사(하이에이치알 노무법인)



## 은평구 폭염관련 노동자 근무환경실태 연구

2023.12.14

이원희(하이에치알노무법인)

### 연구배경과 목적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 직접적인 건강에 대한 영향이 심각
  - 2023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외부작업노동자 열사병, 하남소재 쇼핑카트 30대 노동자 사망
  - 폭염은 급성 열질환 외에 심혈관, 호흡기 및 급성질환, 생식건강과 관련된 문제 악화, 생산성 저하, 부상 및 사망률증가(이상윤, 2023)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67조 제2항 및 KOSHA-GUIDE로 폭염 하에 물, 그늘막, 휴식을 언급하나 현장에 적용여부 검토 필요
- 목적
  - 폭염으로 인한 야외노동자로 건설, 배달, 도시가스점검원에 대한 영향 및 실태 조사
- 방법
  - 문헌조사와 해당 분야 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

# 폭염관련 온열질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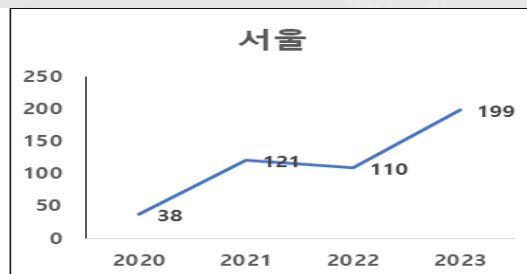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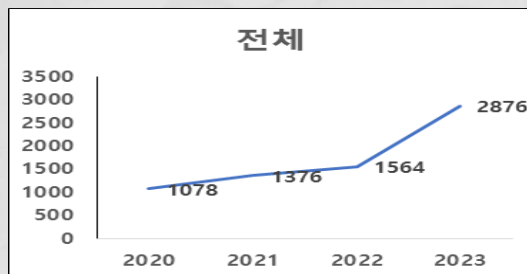
## 기상특보 및 폭염기준

기상특보 (기상청)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
폭염 주의보	①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경보	①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관련 온열질환 실태

온열질환자 발생 통계 연도별 비교

	2023		2022		2021		2020	
	질환자	추정사망자	질환자	추정사망자	질환자	추정사망자	질환자	추정사망자
전체	2,816	32	1,564	10	1,376	20	1,078	9
서울	199	1	110	7	121	8.8	38	3.5



(출처: 질병관리청)

# 폭염관련 온열질환 실태

온열질환자 2023년도 발생현황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기타	전체
빈도	492	1597	432	235	1	59	2,816
비중 (%)	17.5	56.7	15.3	8.3	0.0	2.1	100

실외작업중 온열질환 발생현황

	계	작업장	운동장(공원)	논밭	산	강가/해변	길가	주거지 주변	기타
빈도	2,241	913	171	395	72	32	284	105	269
비중 (%)	79.6	32.4	6.1	14.0	2.6	1.1	10.1	3.7	9.6

온열질환자 직종별 발생현황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 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기타	전체
빈도	20	86	62	83	27	247	87	119	591	61	1,433	2,816
비중 (%)	0.7	3.1	2.2	2.9	1.0	8.8	3.1	4.2	21.0	2.2	41.3	100

# 폭염관련 법령 및 규칙

● '고열'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폭염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li> <li>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li> <li>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li> <li>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li> <li>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li> <li>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li> <li>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li> <li>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li> <li>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li> <li>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li> <li>11. 경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li> <li>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li> <li>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li> </ol>
--

● 폭염관련 관리의무조항-물, 그늘진 장소, 휴식시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제2항신설

<p>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lt;신설 2017. 12. 28.&gt;</p> <p>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 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12. 28.&gt;</p> <p>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p> <p>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lt;개정 2017. 12. 28., 2022. 8. 10.&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li> <li>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ol>
--

## 폭염관련 법령및 규칙

### ● 고열작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 법, 시행령에 명기된 관리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 유해광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9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③ 법 제1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 폭염관련 법령및 규칙

### ● 고열작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기된 관리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① 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 폭염관련 법령및 규칙

## ● 기타 재해관련 법령및 규칙의 적용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 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의 예시>(출처: 고용노동부, 2019)**

- ① 높이가 2미터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 ② 비계, 거푸집 등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③ 토사, 구축물, 공작물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④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⑤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 ⑥ 밀폐공간 작업으로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적정공기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 ⑦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 폭염관련 법령및 규칙

## ● 기타 재해관련 법령및 규칙의 적용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관리기준준수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에서 같다)**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라. 배달원(본조신설 2022.8.16)

## 폭염관련 법령및 규칙

- 산업안전보건 공단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예방 지침(202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62조(고열 장애 예방조치)에 의거 폭서기 옥외근로자, 온열현장 작업자에게 해당

-(적용범위): 옥외 작업자, 계절과 관계없는 고열 작업환경은 적용하지 않음

-(용어정의): 온열질환: 열경련, 열탈진또는 열사병 등을 통칭하는 고열로 인한 건강장애

체감온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체감온도 정보로 5월~9월까지 적용, 기상청측정소가 먼 경우 WBGT사용

-(체감온도와 폭염특보에 따른 대응)

구분	대응
체감온도 31도 이상	그늘, 물, 민감군 (과거 온열질환경험자, 만성질환자, 내분비질환자, 고령자, 불침투성 작업복, 중등도 이상의 신체활동자)확인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발령 시	매시간 10분씩 그늘 휴식,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단축, 작업시간대 조정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5분씩 그늘 휴식, 오후 2시~5시 옥외작업중지,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보냉장구 준비 및 사용
체감온도 36도 이상, 폭염경보 발령시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제외하고 옥외작업 중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및 (안전보건 교육)

## 폭염관련 정부대책

- 폭염관련 정부 대책은 2005년 소방방재청-> 2018년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자연 재난에 폭염이 포함되면서 범정부 폭염종합 대책으로 발전

- 행정안전부 산하 17개 부처 및 지자체가 관계기관 합동 TF 가 구성되고 운영

- 폭염대응요령 사업장 홍보 내용(행안부)

-열사병 3대 예방수칙(물, 그늘, 휴식) 및 무더위 시간(14시~17시)옥외작업 단축 또는 조정 권고

-옥외작업시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조치 홍보

- 2023년 행정안전부 폭염관련 정부대책

추진 전략	중점 과제
1.3 대 취약 분야 점검·관리 강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 공사장 등 현장근로자 안전관리 강화 노년층 농업종사자 폭염피해 예방대책 추진
2. 범정부 폭염 총력 대응체계 확립	관계기관 합동 폭염 대응체계 구축·운영 비상근무 체계 유지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총력 대응 신속한 피해상황 확인·지원 및 현장 구급체계 운영 담당자 교육·훈련 등을 통한 폭염 대응역량 제고
3. 국민과 함께하는 폭염대책 추진	폭염 대응 대국민 인식 개선 및 홍보 확대 여름철 전력대란 예방대책 추진 농림·축산·어업 피해 예방대책 추진 실외 유원시설 및 교육기관 안전교육 강화
4. 폭염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폭염피해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회기반시설(도로, 철도 등) 폭염 피해 최소화 중·장기적 관점의 폭염대비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이행기반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범정부 총력 대응 + 국민의 관심과 참여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 폭염관련 정부대책

### 아외근로자용 온열질환 특성 자가진단표

온열질환(폭염으로 인한 질환) 관련 자가진단 조사표

나는 '더위 먹었다'고 느낀 증상(어지러움, 두통, 열, 경련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문항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
1				
2				
3				
4				
5				
6				
7				
8				
9				
10				
11				

총 점수 (44점 만점)

기준 점수	27점 이하	28점~32점	33점 이상
온열 질환 취약도	낮음	보통	높음
비고	-	폭염 시기 보충 주의 필요	폭염 시기 높은 주의 필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일하는 안전한 나라 행정안전부

### 아외근로자용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

현재 느끼지는 증상을 체크해주세요.

구분	문항내용	예	아니오
1	평소보다 높은 체온		
2	두통		
3	어지러움		
4	메스꺼움		
5	근육경련		
6	지나치게 많은 땀 흘림		
7	구역질		
8	갑작스러운 피로감		

2개 이상 '예'라고 답한 경우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햇빛의 노출을 피하세요.
- 시원한 물 마시기. 시원한 물로 샤워하여 체온을 낮추세요.
-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일시적 휴식을 취하거나 증상이 심한 경우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일하는 안전한 나라 행정안전부

# 폭염관련 정부대책

- 고용노동부의 폭염관련 안전대책
  - 폭염재난 예방 대책 실시지원
  -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지방관서별 홍보
  -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 서울시 폭염관련 대응 -서울특별시 폭염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 서울시 여름철 폭염종합 대책: 1) 폭염대응체계 강화 2) 취약계층 보호 3) 폭염저감시설 확충
- 은평구 폭염관련 대응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 폭염종합대책발표, 상황관리 전담팀 구성 폭염피해 예방활동
  - 복지관, 경로당, 동주민센터 등 188곳 무더위 쉼터 지정, 횡단보도 교통섬 등에 그늘막 84곳 운영
  - 살수차 동원, 버스정류장 9곳 냉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쉼터
  - 노인맞춤 돌봄기관 2곳, 선풍기 579대, 여름이불 800개 암막우산 760개 지원
  -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2만 가구 냉방비 지원, 배달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에 대한 생수 지원, 쿨키트, 이륜차 용 반사스티커 무료 배포

# 기존 이론 및 실태 조사

## ● 전국건설노조 실태조사

- 2023년 8월 형틀목수, 철근, 타설 등 토목건축 현장노동자 3,206명을 대상으로 설문
- 휴식여부: '폭염이어도 중단없이 일하고 있다' 81.7%
- 건설현장 130곳의현장에서 622건의 체감온도 기록: 기상청발표보다 평균 4도 정도 차이가 남



- 2022년 설문: 폭염으로 동료가 구토나 메스꺼움 등 실신하는 징후를 보인적이 있는가에 52.4%가 있다고 말함
- 폭염관련 정부대책이 건설현장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강제성이 없어 건설현장에 있으나 마나임'이 53.2%

# 실태 조사

## ● 실태조사 개요

구분	특징	인터뷰 일시	인터뷰 장소
라이더	A 남성, 만 53세, 근무경력 18년	2023.10. 16	은행 상상 회의실
	B 남성, 만 43세, 근무경력 20년		
	C 남성, 만 45세, 근무경력 3년		
	D 남성, 만 61세, 근무경력 7년		
건설	A 남성, 만 56세, 근무경력 2년 (비계)	2023.10. 22	은행노동자종합 복지센터
	B 남성, 50대, 건설노조간부	2023.10. 31 오후1시	건설노조사무실
	C 남성, 40대, 근무경력 5년 (형틀목공)	2023.11. 6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
	D 남성, 40대, 근무경력 5년 (철근 등)	2023.11.18	은행 상상 흐름방
도시가스 점검원	A 여성, 40대, 근무경력 6년	2023.11.17	은행 상상 회의실
	B 여성, 50대, 근무경력 18년	2023.11.17	은행상상 회의실

## ● 인터뷰 내용

구분	세부내용
응답자 특성	연령, 성별, 근무 기간
근무조건	업무 특징, 근무 시간, 보수 수준 등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현황, 작업중지권실시 현황, 교육 등
폭염관련 실태	폭염관련 정보 인지 정도, 코샤 가이드에 기초한 사업장내 대책 현황, 물, 그늘막, 휴식 관련, 온열질환 자각증상점검표, 보냉 장구(아이스조끼, 아이스팩 지급 등)
개선방향	폭염관련 정부 대책에 대한 개선 방향

# 실태 조사-건설노동자

## ● 근무조건

- 60개 직종을 가지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업무

연번	직종	연번	직종	연번	직종	연번	직종
1	토공	16	도장	31	건축배관	46	플랜트제관
2	포장	17	철근	32	보일러	47	덕트
3	궤도	18	콘크리트	33	상하수도 배관	48	플랜트덕트
4	보링	19	창호	34	플랜트기계설비	49	일반용접
5	준설	20	비계	35	플랜트전기설비	50	(일반)특수용접
6	측량	21	판넬조립	36	플랜트건축설비	51	플랜트용접
7	형틀목공	22	도배	37	플랜트배관	52	플랜트특수용접
8	건축목공	23	유리	38	조경	53	송변전
9	조적	24	수장	39	별목부	54	배전
10	미장	25	보온	40	건설기계	55	내선전기공사
11	건축	26	플랜트보온	41	일반기계	56	외선전기공사
12	방수	27	지붕	42	잠수	57	철도신호제어
13	코킹	28	철거	43	문화재시공	58	정보통신
14	타일	29	강구조	44	일반기계설비	59	발파
15	석공	30	건축기계설비	45	제관	60	안전관리

## -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업무 특성

(직업소개서, 노동조합을 통해 고용)

“건설은 직업소개소를 거치게 되면 수수료를 내야 하니까 건설노조를 통해서 건설현장에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저도 노조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노조가 방어막이 많이 되어 주었어요.”(건설 C)

“저희 현장에서는 한국인 외에 외국인도 많아요. 그 분들은 아무래도 일당이 싼편이라 소개소 통해 들어오는 것 같고, 저희는 노조를 통해 들어가고 같은 공정을 하지는 않는데 대신에 외국인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 부분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들어가서 수정작업을 하기도 합니다.”(건설 D)

# 실태 조사-건설노동자

## ● 근무시간

- 폭염과 한파에 무리하지 않게 진행하는 경향

“일은 여름에는 조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대체로 오전 5시, 6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면 다 끝나요.”(건설 B)

“일은 보통 아침 8시에 시작해서 11시 까지 하고 2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쉬어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일을 하고 30분 쉬었다가 오후 5시까지 일하고 퇴근해요. 5시에서 7시 까지 늦어지면 공수를 절반 정도 추가해줘요.”(건설 A)

● 일당제로 운영되는 임금 : 평균 15만원 정도 일당

“현장에는 대체로 가공, 준기공, 조공이 있는데, 초보는 조공이라고 하고 대략 14만원에서 16만 5천 원 정도 조공 임금이 책정되어요.”(건설 C)

## ● 안전보건 관련

- 잘 지급되지 않는 안전대

“안전모와 안전화는 지급하는데 안전대 같은 경우는 직종별로 좀 다르기는 해요. 비계는 워낙 추락사고가 있을 수 있어서 본인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는데, 형틀목공이나 배관은 큰 공사 현장은 지급해 주는데, 보통 작은 곳은 잘 안주죠.”(건설 C)

“안전화와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안전화와 안전모만 지급하고 안전대는 잘 지급하지 않아요.”(건설 B)

## ● 사용하기 어려운 작업 중지권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하도록 개정되어서 법적으로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그걸 행사하면 나중에 집에 가서 쉬시고 내일부터 꼭 쉬세요 한다는 거죠. 다만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도 임금은 나와요. 그렇지만 고용이 계속되지 않을 거죠.”(건설 B)

## 실태 조사-건설노동자

### ● 사용하기 어려운 휴식시간의 운영

“저희는 40분 일 하고 10분 쉬라고 하는데 그게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경우 다시 내려오기가 기계사이로 움직여야 하고 연장도 가 지고 있어서 쉬는 시간이 있어도 잘 안 내려와요.”(건설 A)

“건축물 오르내리지 않아도 화장실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령지 못해요. 그러나 보니 본의 아니게 위생개념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편이에요.”(건설 B)

### ● 적절하지 않은 휴게공간과 편의시설

“실 때는 절근 이런 작업이 진행 된 뒤에는 햇빛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그냥 쉬어요.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단열재 이런 게 있으면 깔고 쉬어요. 큰 업체는 휴게실용으로 천막 정도는 해주기도 해요. 그런데 공사규모가 적은 곳은 휴게실은 커녕 화장실도 없어서 예전에 흥대까지 뛰어 갔다 오곤 했어요.”(건설 C)

### ● 불충분한 안전교육

“저희 회사는 아침에 팀별로 일하기 전에 체조하고 작업에 대한 설명해주고 혹시 몸이 안 좋은 사람 있으면 휴게실에서 좀 쉬다가 일 시작하게끔 배려해 줘요. 새벽부터 일하려고 나온 사람인데 일하지 못하게 하면 안되니까”(건설 A)

### ● 제대로 운영되지않는 그늘막과 휴식시간

“물을 가지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장비가 많은 데 물을 가지고 가면 잘 못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건설 A)

“물은 땅 밑으로 3층까지 파고 들어간 경우에는 제방실을 마련해서 얼 음도 만들고, 식염정도 받아서 물이랑 같이 먹고.”(건설 C)

## 실태 조사-건설노동자

### ● 기상청 체감온도보다 훨씬 높은 현장의 체감온도

형틀 목공의 경우 만지는 것이 콘크리트를 붓기 위한 거푸집을 만지는 데 그게 프레임은 철로 되어 있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한여 름에 햇빛을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타설도 콘크리트가 레미콘 에서 펌프카로 타설이 되면 뜨끈뜨끈 한 상태로 오거든요. 그 자체로 더 운데 콘크리트에 장화신고 들어가서 일을 하면 위에서 햇빛이 내리쬐고 콘크리트 수화열을 같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건설 B)

“아이스조끼는 일시적이라 고열 상태에서 오래 일하는 건설노동자 에게는 별로 맞지 않아요. 차라리 선풍기조끼를 개별적으로 사서 입 는 사람은 있어요. 그리고 쿨 스카프 이런 것은 정말 별로여서 거의 안 씁니다.”(건설 D)

### ● 건설노동자가 모르는 자가점검진단표

“사업장에서 온열 자가진단 점검표는 본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불 일도 없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안전 교육을 해요. 원래는 분기당 6시간이라 한 달에 2시간씩 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막상 그렇게 안 해요. 폭염 관련하여 안전 교육시간에 언급한 적은 있어요.”(건설 C)

### ● 열사병에 속수무책

“올해도 열사병 때문에 한 내분 정도 쓰러졌는데, 쓰러지면 무조건 119 부르고 작업은 계속해요. 그 해당 팀만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 작업 중지 되고 현장은 계속 일해요”(건설 C)

“저희 일하는 현장에서 폭염에 외국인이 쓰러 진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가 다가 식당 앞에서 쓰러져서 응급조치하고 119에 실려 갔어요. 그래서 어 지럽다고 하면 가서 잠깐 쉬라고 하고 그래요.”(건설 D)

## 실태 조사- 건설노동자

### ● 현장가까이에 설치 가능한 휴게실(그늘막)과 화장실이 필요

“먼지 날리는 그늘 막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15분 시간을 맞추려면 3층마다 휴게실이나 그늘막이 있어야 한다는 거구요. 그렇지 않으면 작업특성을 고려해서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거나 최소 1시간에 20분은 쉬게 해야 해요.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요.”(건설 B)

### ● 온도에 따른 작업증지권 실질적인 행사

“돈이 많은 건설사는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도록 하는 안전모를 지급한 적이 있어요. 온도가 35도, 40도, 45도 이렇게 올라가면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깔에 따라 쉬어라 라고 하는 지침이 나와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모자를 지급하지 않아요.”(건설 D)

### ● 고열작업에 폭염도 확대 적용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에서 고열 작업에 폭염을 적용해주었으면 좋겠어요.”(건설 B)

## 실태 조사- 배달라이더

### ● 근로조건 -여전한 장시간 노동

“저는 10시에 나와서 오후 2시 반이나 3시 정도까지 하고 점심을 먹고 좀 쉬었다가 오후 5시나 5시 반 정도부터 일을 해서 밤 9시나 10시정도까지 합니다.”(라이더 A)

“저는 하루에 16시간 정도 합니다. 아침에 6시에 나올때도 있고, 8시에 나올 때도 있고, 밤 11시나 12시 정도 까지 합니다. 잠자는 거 빼고 계속하는 거죠”(라이더 C)

### ● 월 평균 250만원 정도 하는 소득

“평일이냐 주말이냐에 따라 주문량이 다르고, 축구를 하거나 이러면 주문량이 폭주를 하거든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평일은 한 10~15만원 정도 하고요, 주말은 15~20만원 정도 합니다.”(라이더 B)

### ● 불충분한 안전교육

“자연재해에 대한 오토바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원에 가서 해야 되요. 지리적으로 멀어서 가는데 2시간 30분씩 걸리고 교육은 6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교육받으면 5만원이 나오더니 그것도 2분기부터는 안 나와요. 그러니 누가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라이더 D)

“안전교육에는 폭염관련 교육 내용이 아주 짧게 나와요. 온열질환 알려 주고 너무 더우면 그늘에 가서 쉬라고 하고 라이더와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죠”(라이더 A)

### ● 일부회사 폭염수당 및 물쿠폰 지급

“폭염이 되면 업체에서도 문자로 연락이 와요. 기본적인 주의사항으로 너무 더울 때는 쉬라고 하는데 이게 쉬면 수입이 안되니까 설수가 없죠”(라이더 B)

“K사에서 더울 때 일주일에 한번 생수 쿠폰을 주었어요. 전국편의점에서 지리산 맑은 샘물 500ml 교환권을 보내 주는 거죠. 그러면 편의점 들어가서 주구장창 있어요.”(라이더 C)

## 실태 조사- 배달라이더

### ● 무용지물인 자가진단점검표

“사업장에서 온열 자가점검이나 자가진단점검표 이런 걸 본적은 없습니다.”(라이더 A)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 이런 건 받아보거나 설명을 들어 본적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는 햇볕을 다 받고 다니니까 체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야외 근로자 용으로 좀 더 필요한 항목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라이더 B)

### ● 도움이 안되는 보냉장구와 정부 대책

“쿨 키트나 쿨 스카프는 별로 큰 도움이 안되고요. 아이스 조각도 얼음이 녹으면 교체를 해주어야 하잖아요. 무겁기도 하고요. 쿨 토시는 그나마 괜찮아요. 햇빛에 안타니까.”(라이더 D)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고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배달 노동자는 사실 무더위 쉼터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기도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해요. 그리고 간다고 해도 그곳이 1층이어야 잠깐이라도 들리지, 주차공간이 없으면 잠깐 가는 것도 힘들어요.”(라이더 D)

### ● 개선방향 - 폭염수당에 엇갈린 의견

폭염수당을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라이더를 사각지대로 더 모는 거잖아요. 폭염 수당을 안주고 쉴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차리리 불별타워에서 일하는 라이더를 위해 쿨을 끊고 쉬게 하고 휴업 수당 같은 걸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이더 A)

“저는 폭염수당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라이더는 풀이 와도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쉴 수 있게 되면 벌이가 줄어드는데 그것보다는 힘들면 자율적으로 쉬면되는 거고 폭염에도 내가 쿨을 받아 수행을 한다면 폭염수당을 주는 게 맞다고 봐요.”(라이더 C)

### ● 개선방향 - 정기적인 생수와 식음포도당알약 지급

“동마다 주민센터에 물을 비치해서 내리지 않고 그냥 바로 집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라이더 A)

“생수하고 식음포도당 알약을 주면 좋겠어요. 폭염에 물만 먹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수도 있거든요.”

## 실태 조사- 도시가스점검원

### ● 근무조건 - 여성근로자가 대부분, 점검/검침/송달업무

업무는 3가지예요. 점검, 검침, 송달이예요. 점검은 가스 안전 누출여부,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걸로 6개월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고, 검침은 사용량을 검침하고 가스비를 받으니까 한달에 한번 일어나고, 송달은 청구서를 송달하는 거예요.”(도시가스점검원 B)

### ● 과도한 1인당 업무량

“각 센터에는 약 40~50명 정도가 있고요. 한 사람당 3600전에서 3700전을 맡아서 진행을 해요. 보통 전이라고 표현하는데 한전 계량기 하나에 한 전이라고 하니까 세대마다 한 전 씩 있다고 보면 되죠.”(도시가스점검원 B)

“문제는 요즘 점검하러 가면 대부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연락해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을 맞추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안되는 사람도 있고, 다시 방문하고 하는데 3번을 방문하면 그냥 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센터도 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점검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적고 3600전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1전당 3번 이상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도시가스점검원 B)

### ● 간주시간근로제와 출퇴근제 혼용

“출근제로 운영하는 곳과 간주시간근로제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출근을 원하지 않아요. 사실 출근시간 퇴근시간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나마 장점인데 출근제로 운영하면 점검원들이 많이 그만들꺼예요.”(도시가스점검원 A)

### ● 생활임금 적용되나 최저 수준

월급은 생활임금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생활형 임금으로 기본급에 통상수당을 합쳐서 주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월급이 220여 만 원 정도예요. 이 통상수당에 교통비, 통신비 등 통상수당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여금은 100%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금협상이 안되어서 21년도 월급으로 받고 있어요.”(도시가스점검원 B)



## 실태 조사- 도시가스점검원

### ● 빈번한 안전사고

“사실 나이가 50대 중반이 많고 점검 후에 기록하면서 걸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겨울에는 미끄러져서 다치거나, 점검 시 계량기가 너무 후미진 곳에 있어서 별레나 개, 고양이가 튀어나와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 아파트나 산동성이가 있는 곳에서 골절을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도시가스점검원 B)

### ● 고객의 성희롱 및 폭언 폭행 등의 위협 노출

“요즘은 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개가 안문다고 하는데 물기도 하고요. 고객들이 쌀쌀맞은 고객들이 있어요. 점검을 무슨 사생활 침해라고 하면서 따지는 분도 있고요, 한번은 전자발찌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집을 점검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죠.”(도시가스점검원 A)

### ● 폭염기관규정은 있으나 권고사항인 격월검침

“저희도 폭염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2번이나 병원가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니까 폭염시기에는 격월 검침을 하게 되었어요. 2019년 이후에 폭염으로 쓰러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6월에서 9월까지 네 달 동안 두 번만 검침하도록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다 시행하지 않고 노조 있는 곳만 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노조원은 격월 검침 하지 않고 다 그냥 하는 거죠.”(도시가스점검원 B)

### ● 물사용 쿠폰 발급

“물을 사먹으라고 쿠폰이 3만 원짜리 하나, 2만 원 짜리 하나 받았어요. 유희가 처음이었어요.”(도시가스점검원 A)

“폭염이 되면 센터장이 밴드에 가능하면 더울 때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올려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폭염 주의보가 있으니 업무를 자제하고 물을 섭취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쉬시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적인 거죠. 예약도 다 되어 있고, 실적 압박도 있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도시가스점검원 B)

## 실태 조사- 도시가스점검원

### ● 심터나 자각증상점검표 등의 정보 부족

“심터 관련 정보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알고는 있는데 동네마다 한 두 개가 있으면 알기 쉬울 텐데 휴게실이 너무 머니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요. 그냥 내 돈 주고 카페 같은 데 가서 화장실도 가야하고 고객한테 연락도 해야 하니까요.”

### ● 개선방향-폭염기간의 격월 검침 의무화

“격월검침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가스 사용료는 고객들이 사용한 만큼 내기 때문에 수익적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거죠. 폭염에 쓰러지는 점검원들을 생각한다면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도시가스점검원 B)

### ● 개선방향-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한 쿠폰 확대

“카페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이나 상품권을 주면 저희들이 그곳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잠깐 더위도 식히고 물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름에는 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있으면서 충전도 하고요”

## 결론

### ●폭염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내 폭염관련 실질적 조치 포함
- 고열 작업에 폭염을 포함
- 실내 작업도 폭염관련 적용 내용을 포함
- 체감온도의 유연한 적용
- 폭염관련 작업중지권 행사시 실질적 임금 보장(계속 고용)
- 배달라이더를 위한 기후 실업급여
- 도시가스안전 점검원의 격월 검침의 의무화

###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지원 마련

- 물과 미네랄, 기타 사용가능한 쿠폰의 안정적인 공급
- 현장중심의 체감 온도 추가
- 실효성 있는 쉼터 마련과 홍보 강화
- 직종별 자가 점검 및 진단표 마련

## 결론

### ●조례 개정을 통한 대책강화

-폭염관련 취약계층에 야외 노동자 포함 및 지원 내용 조례 내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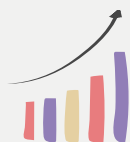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폭염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9의3	장애인복지법의 제2조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 소년 소녀 가정, 한 부모 가족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 내용	제9조 (폭염취약계층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2.선풍기 등 냉방물품보급 3.무더위 쉼터, 살수 시설, 차양막 등 폭염회피 저감시설 설치사업 4.온열질환의료비 지급 5.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 3.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토론



## 재난안전 사회적 위험 시기, 노동안전 과제 모색

김종진 이사장(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 재난안전 사회적 위험 시기, 노동안전 과제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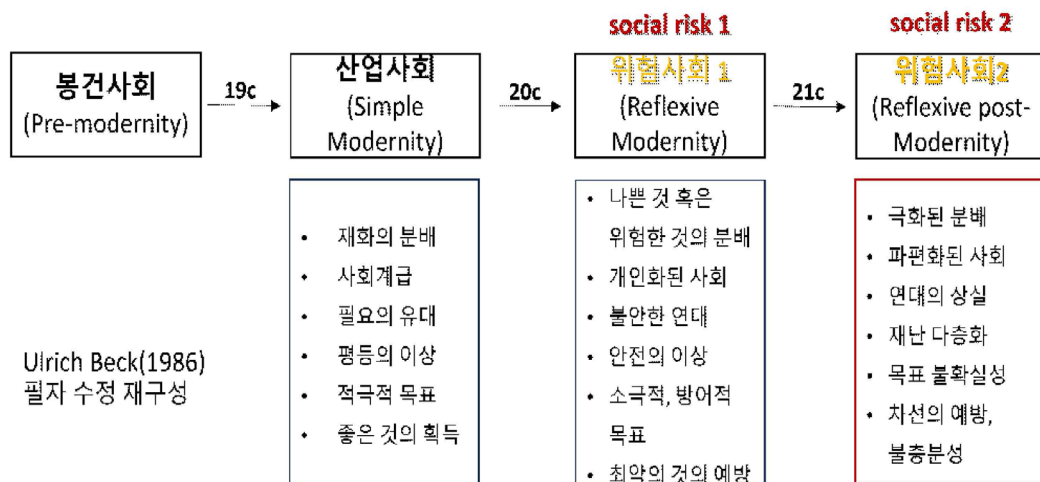
## -은평구 폭염 관련 노동환경 제도적 과제-

김 종 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유니온센터 이사장)

### 변화된 환경 - 재난안전과 기후위기

#### ○ '사회적 위험'의 인식과 방향

- 19세기와 20세기 사회적 위험(social risks)과는 다른 위험도 있지만, 기존 위험의 확대 강화된 사회적 위험이 존재함. 대표적으로 기후위기 시기 재난안전의 영역에서 '폭염'이나 '혹한' 문제임.
- 때문에 기후위기 시기 폭염과 같은 재난안전 관련하여 노동자 안전문제는 중앙정부 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은평구와 같은 광역과 기초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함께 모색해야할 중요 영역임.



#### ○ 21세기 사회적 위험의 확대

- 독일의 사회학자        벡의 <위험사회>(Risk Society)가 출간된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배울점이 있음. 벡은 과거의 자연재해나 지나친 과학이나 기술의 위험을 지적했고,

인한 불안 증대로의 사회현상을 전망했음.

- 국가와 사회가 생산과 이윤중심의 논리에만 맡겨 둘 경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음. 사회·경제 시스템과 삶의 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적절한 개입과 규제가 필요함. 지나친 과학기술발전 폐해는 물론 급속한 산업구조 개편 과정이 초래한 문제점에 대응

## 변화된 환경 - 재난안전과 기후위기

### ○ 폭염과 같은 기후위기의 '위험'이란?

- 본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폭염'은 산업화 시기부터 문제점(예견된?)으로 지적된 현상들이며, 지난 100년 동안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가 아닌 '지구 열탕화'(global boiling)로 인식해야 할 문제임.
- 보고서 1쪽 서론/연구배경에서 언급된 노동자 사망사고 등은 기후 재앙(기후 재앙 Climate disaster)으로 인식하고, 사실 현 시기 정부는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의 하나로 재난안전 및 산업안전 법률과 정책을 수립해야 함.

'위험'의 스펙트럼 3가지 범주 (N. Luhmann, 1993)

- ✓ **자연적** 위험 : 인간 이나 인위적인 기술과는 무관한(?) 자연현상의 급변, 천재지변, 혹은 신의 행위로 말미암은 **재앙**(Disasters)
- ✓ **기술적** 위험 : 건물이 나 교량의 붕괴, 공장폭발, 오염 등 인공적 산물이나 기술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사고**(Accidents)
- ✓ **사회적** 위험 : 사기, 절도, 방화, 폭력 등 순수하게(?) 인간 행동만으로 인해 비롯되는 **사건**(Incidents)

불이익 얻을 가능성  
위험 야기 원인  
초점 3가지 영역



### ○ '폭염' 관련 기존 제도와 정책 한계들

- 기존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유관 정책은 주로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예방과 지원 (2022년 태풍, 폭염대책, 2023년 폭염 정부 대책등)에 국한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

법」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 559조 고열작업 13개, 한랭작업, 다습작업 등)에서도 고열 관련 항목들 위주로 되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제39조) 및 유해위험작업(139조)은 근로시간 제한 등에 국한되어 있고, 폭염 시 노동안전보건에서는 부재하며, 다만 제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중지권(51조, 52조)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활용 가능한 조항이 있기에 폭염 시 가능한 조항이 있을 뿐임.
- 고용노동부의 폭염재난 예방 대책(2022년 안전보건공단)이나 지원 기준 등에서는 주로 특정 업종이나 일부 지원 대책 수준에 불과함.

### ○ ‘폭염’ 관련 기존 제도와 정책 한계들

- 서울시(2023.10.04.)나 은평구(2019.09.30)에서는 ‘폭염’ 관련 자치법규(조례)가 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단체장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 대책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정되었음.
- 다만,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해당 조례에서는 전통적인 기후변화 인식에 초점을 두어 폭염의 기준(온도)나 대상 및 지원(취약계층에서 ‘노동자’ 인식 부재) 등도 전혀, 옥내외에서 일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노동안전 문제에 대한 관점은 부재했음.
- 결국 은평구에서 ‘폭염 관련 노동자 대응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은 우리 사회 지방정부 모범사례( best practice)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임. 이는 조례 일부개정을 포함하여 종합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모색하는 것임.

## ‘폭염’과 같은 재난안전 대응 과제

### ○ 자치구 조례 개정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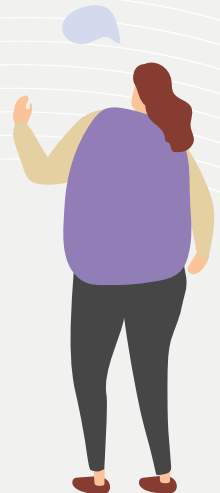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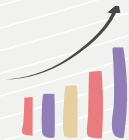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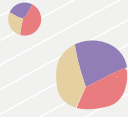
- 현행 폭염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제1440호)의 ‘정의’(제2조)에서 폭염 유관 업무와 노동자 조항 추가(제6조 폭염 취약계층 ‘마’ 항목 신설) 필요
- 조례 제7조(재난 도우미 운영) ①의 4항목에 사업장 및 사업에서 규정한 노동안전보건 전담(지정자 포함) 추가, 노동권익(종합지원)센터 담당자 추가 검토
- 제10조(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 3에 ‘기후 (무더위) 피난/대피처 설치 및 운영’ 추가(지역

관내 유관 시설 mou 포함) 통한 지원

### ○ 폭염 대응 유관 정책 사항

- 현행 폭염 유관 노동자(산업: 제조건설업, 운송업, 주요 서비스업, 직종: 이동노동자, 시설 관리, 생활폐기물 수거 등 → 야외/옥외만 아닌 실내 물류센터 등 존재) 대상 선정 및 기간/시간대 작업 중지권(피할 권리, 벗어난 권리) 적용 사업 추진
- 해당 시간 폭염 발생 시(적정 폭염 기준 적정한가? 새롭게 모색 ; 정부 기준 부적합) 노동자 대상 각종 필요 지원 물품 제공, 주요 현장 프로세스 마련(예시: 코로나 19 시기 마스크, 손세정제 준비 목록 유사)
- 기존 정규직 및 안전한 노동자와 달리 시급, 일급 등 저임금/저소득, 불안정/비정형 노동자(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들의 폭염으로 인한 소득 보전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 수립(조례 개정과 연동 검토 → 코로나19 긴급지원금처럼 기후수당 등 국내외 유사사례 검토)

# 현장 발언





---

# 현장노동자 1.

---





---

## 현장노동자 2.

---







**발행일** 2023년 12월 10일  
**발행인** 강화연  
**발행처**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주소**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1045  
**대표전화** 02-6952-1875  
**홈페이지** [eplabor.org](http://eplabor.org)  
**디자인** 작은성공작소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Eunpyeong-gu Labor Support Center

